

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

(앞쪽)

1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2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3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

계정 과목	구 분	자체 연구개발비				
		인건비		재료비 등		기 타
		인원	⑥ 금액	건수	⑦ 금액	건수
합 계						
계정 과목	구 분	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		인력개발비		⑪ 총 계 (⑥+⑦+⑧+⑨+⑩)
		건수	⑨ 금액	건수	⑩ 금액	
		합 계				

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

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 (=⑪)	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(⑭+⑮+⑯+⑰)	⑭ (직전 1년)	⑮ (직전 2년)	⑯ (직전 3년)	⑰ (직전 4년)
⑱ 직전 4년간 연 평균발생액 (⑬/4)		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[(⑭+⑮+⑯)/3]		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[(⑮+⑯)/2]	
㉑ 증가발생액 (⑫-⑱)					

4 공제세액

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	중소기업	㉒ 대상금액 (= ⑪)	㉓ 공 제 율			㉔ 공제세액 (㉒×㉓)
	중소기업 유예 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	㉕ 대상금액 (= ⑪)	㉖ 유예기간 종료연도	㉗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	25%	㉙ 공제세액 (㉕×㉙)
					중료 이후 1~3년차 15% 중료 이후 4~5년차 10%	
	중견기업	㉚ 대상금액 (= ⑪)	㉛ 공제율			㉜ 공제세액 (㉚×㉛)
일반기업	㉝ 대상금액 (= ⑪)	공제율			㉞ 공제세액 (㉝×㉞)	
		㉟ 기본율	㊱ 추가	㊲ 계 (㉟+㊱)		
		0%				
증가발생금액 공제 (직전 4년간 연구·인력개발비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<⑱ 경우 공제 제외)		㉟ 대상금액 (= ㉑)	㉛ 공제율		㊳ 공제세액 (㉟×㉛)	*공제율 -중소기업: 50% -중견기업: 40% -대기업: 25%
㊴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		중소기업 (㉔와 ㊳ 중 선택)				
		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(㉔와 ㊳ 중 선택)				
		중견기업(㉜와 ㊳ 중 선택)				
		일반기업(㉞과 ㊳ 중 선택)				

⑤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단서 관련) = 연구·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					
구분	정부출연금 교부처	관련 법령	수령일	수령 금액	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

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											
구분	인정일 (고시일)	취소일	연구개발 인력								
			계		연구전담요원		연구보조원		기 타		
		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'일반연구·인력개발비'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1.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- 2. 재료비 등의 "㉗ 금액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건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(문화상품제작에 한함)·서체·음원·이미지의 대여·구입비를 적습니다.[별표6 제1호가목2) 항목]
- 3. 기타의 "㉘ 금액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·시험용 시설 임차(이용)비용을 적습니다.[별표6 제1호가목3) 항목]
- 4. 인력개발비의 "㉙ 금액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,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.
- 5. 공제율의 "㉚ 추가"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·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- 6. ⑤, ⑥의 "구분"란은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.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
- 7. "⑤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8. "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"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과 세 연 도	. . . ~ . . .	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발생 명세	법 인 명	
			사업자 등록번호	

1. 인건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① 연구과제명	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			
	성명	생년월일	인건비지급액	연구전담 등 구분
합 계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				[]전담, []보조, []기타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③ 연구 과제명	④ 재료비 등				
	계	건본품 등 (별표 6 1.가.2))	임차료 등 (별표 6 1.가.3))	위탁·공동연구비 (별표 6 1.나)	기타 (별표 6 1.다~사)
합 계					

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⑤ 연구 과제명	⑥ 연구개발비				⑦ 금액	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
	상호 또는 성명	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	연구착수일	연구종료일		
합 계						

작성 방법

※ 각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1)]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1. 인건비 발생 명세

가. "①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
나.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다. "② 연구개발 인력 개발비"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(1)]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의 '⑥금액'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라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(다만,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).

마. "연구전담 등 구분"란은 []에 '연구전담요원', '연구보조원', '기타' 중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* "연구전담요원"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* "연구보조원"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* "기타"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.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가. "③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
나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(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)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.

다. "④ 재료비 등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(1)]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'⑦금액'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가.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(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) 제1호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
나. "⑤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
다. "⑥ 연구개발비"란은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(재위탁 포함)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(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)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.

라. "⑦ 금액"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(1)]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의 '⑨금액'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마. "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"란은 위탁·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.